

2019년도 제23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1. 1.(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김경숙 위원(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9건(안건번호 제2019-139985호~14006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본 건 심의안건의 대상이 된 제2019-139985호 ~ 140064호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들로서 온라인상으로 이들을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 및 모바일 사이트에 게시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바, 이는 합법적인 이용행위를 벗어나는 불법 이용행위에 해당함. 특히 이들의 불법 복제물에는 최신 인기있는 TV 드라마와 영화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이들 게시물들은 모두 제133조의 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안전번호 제2019-139986호, 제2019-139990호 ~ 139992호, 제2019-139994호, 제2019-139996호, 제2019-139999호, 제2019-140002호, 제2019-140003호, 제2019-140005호, 제2019-140006호, 제2019-140013호, 제2019-140020호, 제2019-140022호, 제2019-140027호 ~ 140032호, 제2019-140034호, 제2019-140040호, 제2019-140041호, 제2019-140042호 ~ 140055호, 제2019-140058호 ~ 140059호, 제2019-140061호 ~ 140064호는 불법복제물이 이미 삭제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B 위원 : 당해 안전 게시물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 133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의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C 위원 : ☆☆☆☆ 사이트의 (방송) 위대한 쇼(2019) 등 99건의 게시물 안건(제2019-139985호~140064호)은 모두 불법 복제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며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D 위원 : 본 99건의 게시물은 모두 불법 복제된 영상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 2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됨

2019년 제239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1.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